

자치법규 입법예고

용진군 공고 제2022-31호

「용진군 군세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구하고자 「용진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. 1. 11.

용진군수

웅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「지방세법」 개정으로 “과세특례”가 “재산세 도시지역분”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「웅진군 군세 조례」에 반영

2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법」 개정에 따라 “과세특례”를 “재산세 도시지역분”으로 용어변경 (안 제15조 및 제16조)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및 발취사항
 - 지방세법 제112조
-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 불임
-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
 - 1) 예고방법 : 웅진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
 - 2) 예고기간 : 공고 후 23일
- 관련상급기관 : 인천광역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

용진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용진군 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 제목 “(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)”를 “(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)”로 하고, 같은 조 1항 중 “얻어”를 “받아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도시지역”을 “도시지역분 대상지역”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과세특례)”를 “(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.4로 한다.”를 “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.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5조(과세특례 대상지역의 고시)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군수가 도시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.</p>	<p>제15조(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) ① ----- ----- -----<u>받아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<u>도시지역분 대상지역</u> ----- -----.</p>
<p>제16조(과세특례) 법 제112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<u>과세특례의 세율은 1천분의 1.4로 한다.</u></p>	<p>제16조(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) -----<u>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.</u></p>

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

관계법령	<input type="checkbox"/> 「지방세법」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제112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
관련법규 정비대상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
관련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해당사항 없음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「지방세법」

제112조(재산세 도시지역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(이하 이 조에서 “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”이라 한다.)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, 건축물 또는 주택(이하 이 조에서 “토지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.

1.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
2. 제110조에 따른 토지 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.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이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.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, 골프장, 유원지,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용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, 제2호

3. 미첨부 사유

- 「지방세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“과세특례”를 “재산세 도시지역분”으로 용어 변경하는 사항으로 비용 미수반

작성자 : 재무과장 박춘봉